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129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이종배 · 서일준 · 이양수  
김용태 · 배준영 · 이만희  
박수민 · 최은석 · 김소희  
성일종 · 추경호 · 윤영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작성·게시·설치 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폭력·교란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에는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제244조제1항 및 제246조제1항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

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부터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u>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壁報 · 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撤去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   |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
| ② <u>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 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   | ② <u>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
|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   |   |
|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 · 攪亂罪)                                                                                                                  |   |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   |   |
| ① <u>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 사전투표사무원 · 개표사무원,</u>                                                                        |   | ① <u>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 사전투표사무원 · 개표사무원,</u>                                                                        |   |   |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46條(多數人の 選舉妨害罪) ① 多數人이 集合하여 第243條(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攜帶罪)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부터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                                                                                                                                                                                              |                                                                                                                                                                                                     |
|----------------------------------------------------------------------------------------------------------------------------------------------------------------------------------------------|-----------------------------------------------------------------------------------------------------------------------------------------------------------------------------------------------------|
| <p><u>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u></p> <p>1. <u>主謀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u></p> <p>2. <u>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u></p> <p>3. <u>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u></p> <p>② (생략)</p> | <p><u>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p> <p>1. <u>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u></p> <p>2. <u>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u></p> <p>3. <u>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u></p> <p>② (현행과 같음)</p> |
|----------------------------------------------------------------------------------------------------------------------------------------------------------------------------------------------|-----------------------------------------------------------------------------------------------------------------------------------------------------------------------------------------------------|